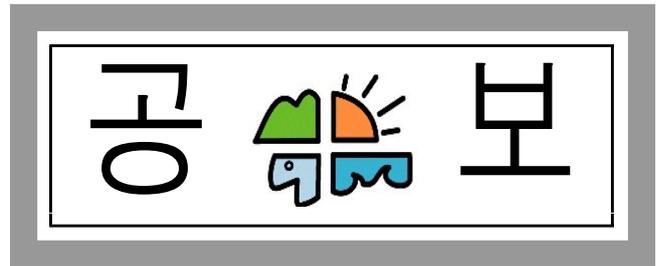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 |
|---|---------|
| 선 | 기 관 의 장 |
| 람 | |



제1286호 2020년 9월 18일(금)

훈 령

- 속초시 설악로데오거리상점가 청년몰 갯배St 운영 및 관리규정 2

공 고

- 도시계획도로(소로2-213호선, 소로3-70호선) 개설공사 수용재결 신청 사항 열람공고 7
-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 14

입법예고

- 「속초시 규제체계 개선·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6
- 「속초시 규제체계 개선·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8
-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56
- 속초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63

발행 : 공 보 감 사 담 당 관 (전화 : 639-2223, FAX : 639-2799)

속초시 설악로데오거리상점가 청년몰 갯배St 운영 및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0년 9월 18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훈령 제 743 호

속초시 설악로데오거리상점가 청년몰 갯배St 운영 및 관리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속초시 설악로데오거리상점가 청년몰 갯배St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설악로데오거리상점가 청년몰 갯배St”(이하 “청년몰”이라 한다)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속초시 중앙동 482-253번지 일원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상인에 대하여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점포 등을 말한다.
2. “입주자”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청년몰 안에서 점포를 가지고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설악로데오거리상점가 청년몰 운영 자치규약”(이하 “자치규약”이라 한다)란 청년몰에 입점한 청년상인의 권리 및 의무사항 등을 정한 것으로 청년상인 전체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규약을 말한다.

4. “청년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자치규약의 제 개정, 운영관련 중요사항 및 제재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청년상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의결기구를 말한다.

5. “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입주자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및 설악로데오거리상점가 청년몰 조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청년몰 상점가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 및 집기

나. 시 및 사업단이 청년몰 상점가 안과 밖에 직접 설치한 시설물 및 집기

다. 입주자 본인이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여 청년몰 상점가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 및 집기

제3조(운영시간) ① 청년몰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11~3월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시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타 운영시간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자치규약에 따른다.

제4조(휴일 및 휴업) ① 정기휴일은 매주 수요일로 하되 임시 휴일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휴일 3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타 휴일 및 휴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자치규약에 따른다.

제5조(시설물 관리 등) ① 입주자는 시 및 사업단에서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

해서 원상태와 같이 보존하고 관리할 책임을 진다.

② 입주자는 본인이 설치한 시설물 및 가구·집기 등에 대하여는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라 한다)와 함께 철거하여야 하며, 시 및 사업단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은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원상태로 보존하고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공유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 해지에 따라 퇴거할 경우에는 권리금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시설물과 입주자 본인 부담의 시설물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시 및 사업단에서 설치한 시설물을 일부 변경 또는 교체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무단으로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및 의결) ① 입주자는 운영위원회에 자동적으로 가입되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운영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자치규약에 따른다.

제7조(경고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주자에게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치규약 제12조(자체 징계 및 제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입주자가 관련 법령과 본 규정 제8조(준수사항)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3. 그 밖에 입주자가 청년몰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준수사항) 청년몰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2. 자치규약에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시에서 정하는 사항 등

제9조(사용·수익허가) ① 청년몰 점포에 대한 사용·수익허가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속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른다.

② 청년몰 점포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 허가 신청서 1부
2. 점포운영계획서 1부
3. 성실히행서약서 1부

③ 사용·수익허가 이후 입주자가 사용·수익 허가기간 만료 전에 점포를 폐업 또는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60일 이전에 시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입주자가 퇴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퇴거하여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포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공모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징계나 제재를 1년간 3회 이상 받을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취소일 전 30일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④ 사용·수익허가 취소 시 당사자가 본인이 설치한 시설물 및 집기류 등에 대하여 철거 및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에서 임의적으로 철거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청년상인의 육성 지원) 시장은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2. 창업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에서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청년몰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시장이 사업운영 관련자료를 요구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토지수용 재결신청 내용을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본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는 속초시 건설도시과에 비치합니다.

2020년 9월 15일

속 초 시 장

다 음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213호선, 소로3-70호선)
- 명 칭 :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213호선, 소로3-70호선) 개설공사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성 명 : (주)무궁화신탁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포스코 P&S타워 22-24층

다. 사업시행지 : 속초시 금호동 473-51번지 일원

라.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 별첨

마. 사업의 내용 : 소로2-213호선(L=216m, B=8m), 소로3-70호선(L=31m, B=6m)

바. 공고기간 : 2020. 09. 15. ~ 2020. 09. 29.

□ 수용대상 토지조서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편입 면적 (㎡) | 지분 | 소유자 | 관계인 | | 비고 |
|------|------------|---------|----|-----------------|-------------|----------------|----------------------------------|--------------------|-----|
| | | | | | | 성명 | 성명 | 권리의 종류 | |
| 1 | 속초시 금호동 | 473-81 | 대 | 2 | 1/1 | 황병찬 | 주식회사조흥은행 | 근저당권 | 잔여지 |
| 2 | 속초시 금호동 | 473-82 | 대 | 38 | 1/1 | 황병찬 | 주식회사조흥은행 | 근저당권 | 잔여지 |
| 3 | 속초시 금호동 | 473-383 | 대 | 38 | 1/1 | 김봉수 | | | |
| 4 | 속초시 금호동 | 473-386 | 대 | 1 | 1/1 | 김필성 | 속초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 회 정부자 | 가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 |
| 5 | 속초시 금호동 | 473-387 | 대 | 4 | 1/1 | 김필성 | 속초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 회 정부자 | 가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 |
| 6 | 속초시 금호동 | 473-388 | 대 | 6 | 1/1 | 박현준 | 김호 | 근저당권 | |
| 7 | 속초시 금호동 | 473-389 | 대 | 15 | 1/1 | 김행선 | 속초새마을금고 | 근저당권, 지 상권 | |
| 8 | 속초시 금호동 | 473-391 | 대 | 106 | 1/1 | 성림종합건설 주식회사 | | | |
| 9 | 속초시 금호동 | 473-394 | 대 | 27 | 1/1 | 이철암 | | | |
| 10 | 속초시 금호동 | 473-396 | 대 | 11 | 1/1 | 유반순 | 속초시 | 압류 | |
| 11-1 | 속초시 금호동 | 473-397 | 대 | 145 | 134/2 86 | 강경천 | | | |
| 11-2 | 속초시 금호동 | 473-397 | 대 | 145 | 62/28 6 | 최선길 | | | |
| 11-3 | 속초시 금호동 | 473-397 | 대 | 145 | 54/28 6 | 황흥준 | | | |
| 12-1 | 속초시 금호동 | 473-401 | 대 | 9 | 1/2 | 윤정희 | | | |
| 12-2 | 속초시 금호동 | 473-401 | 대 | 9 | 1/2 | 임정수 | | | |

| | | | | | | | | | |
|-----------|------------|---------|---|-----|-----|----------------|----------------|--------------|-----------|
| 13 | 속초시 금호동 | 473-402 | 대 | 12 | 1/1 | 김행선 | 속초새마을금고 | 근저당권, 지상권 | |
| 14 | 속초시 금호동 | 473-405 | 대 | 119 | 1/1 | 성림종합건설 주식회사 | | | |
| 15 | 속초시 금호동 | 473-408 | 도 | 65 | 1/1 | 박현준 | 김호 | 근저당권 | |
| 16 | 속초시 금호동 | 473-414 | 대 | 240 | 1/1 | 성림종합건설 주식회사 | | | |
| 17 | 속초시 금호동 | 473-451 | 대 | 6 | 1/1 | 황병찬 | 주식회사조흥은행 | 근저당권 | |
| 18 | 속초시 금호동 | 473-453 | 대 | 3 | 1/1 | 황병찬 | 주식회사조흥은행 | 근저당권 | 잔여지 |
| 19 | 속초시 금호동 | 473-454 | 대 | 59 | 1/1 | 황병찬 | 주식회사조흥은행 | 근저당권 | |
| 20 | 속초시 금호동 | 473-455 | 도 | 1 | 2/5 | 손영희 | | | 미지급 용지 |
| 21 | 속초시 금호동 | 484-146 | 대 | 6 | 1/1 | 김충호 | | | |
| 22 | 속초시 금호동 | 484-147 | 대 | 48 | 1/1 | 김금춘 | | | |
| 23 | 속초시 금호동 | 484-148 | 대 | 20 | 1/1 | 이명선 | | | |
| 24 | 속초시 금호동 | 484-149 | 대 | 42 | 1/1 | 엄두일 | 속초신용협동조합 | 근저당권 | |
| 25 - 1 | 속초시 금호동 | 484-150 | 대 | 63 | 2/9 | 박은주 | 주식회사국민행복 기금 | 가압류 | |
| 25 - 2 | 속초시 금호동 | 484-150 | 대 | 63 | 2/9 | 박흥로 | | | |
| 25 - 3 | 속초시 금호동 | 484-150 | 대 | 63 | 3/9 | 임인자 | | | |
| 25 - 4 | 속초시 금호동 | 484-150 | 대 | 63 | 2/9 | 최춘미 | | | |
| 26 | 속초시 금호동 | 484-180 | 대 | 29 | 1/1 | 최영화 | | | |

□ 수용대상 물건조사

| 연번 | 소재지 | 지번 | 물건의 종류 | 구조 및 규격 | 면적 수량 | 단 위 | 소유자 | 관계인 | | 비 고 |
|----|------------|-------------|---------------|-----------------------------|----------|----------------|-----|--------------|--------|---|
| | | | | | | | 성 명 | 성명 | 권리의 종류 | |
| 1 | 속초시 금호동 | 473-3 97 | 주택 | 시멘트블럭조 슬레이트지붕 | 32 | m ² | 강경천 | | | |
| 2 | 속초시 금호동 | 473-3 97 | 화장실 | 시멘트블럭조 슬라브지붕 2.4*3.2 | 7.68 | m ² | 강경천 | | | |
| 3 | 속초시 금호동 | 473-3 97 | 계단 | 시멘트콘크리트 0.7*1.5 | 1 | 식 | 강경천 | | | |
| 4 | 속초시 금호동 | 473-3 97 | 바닥포 장 | 시멘트콘크리트 | 10 | m ² | 강경천 | | | |
| 5 | 속초시 금호동 | 473-3 97 | 창고 | 시멘트블럭조 슬레이트지붕 3.0*2.0 | 6 | m ² | 강경천 | | | |
| 6 | 속초시 금호동 | 473-3 97 | 보일러 실 | 시멘트블럭조 슬레이트지붕 1.3*2.0 | 2.6 | m ² | 강경천 | | | |
| 7 | 속초시 금호동 | 473-3 97 | 담장1 | 잡석 H1.8*L7.5 | 1 | 식 | 강경천 | | | |
| 8 | 속초시 금호동 | 473-3 97 | 담 장 2 (하단) | 시멘트블럭조 H1.8*L4.5 | 1 | 식 | 강경천 | | | |
| 9 | 속초시 금호동 | 484-1 47 | 주택 | 시멘트벽돌조 슬레이트및기와 지붕 | 34 | m ² | 김금춘 | 주식회사 우리은행 | 근저당권 | 484-10 전체면적: 136.00m ² |
| 10 | 속초시 금호동 | 484-1 47 | 창고1 | 시멘트블럭조 슬레이트지붕 2.3*7.0 | 16.1 | m ² | 김금춘 | | | |
| 11 | 속초시 금호동 | 484-1 47 | 욕실 | 시멘트블럭조 슬라브지붕 2.3*2.8 | 6.44 | m ² | 김금춘 | | | |
| 12 | 속초시 금호동 | 484-1 47 | 보일러 실 | 시멘트벽돌조 슬레이트지붕 | 2 | m ² | 김금춘 | | | 전체면적: 14.30m ² |
| 13 | 속초시 금호동 | 484-1 47 | 영산홍 | R3*H0.7 | 3 | 주 | 김금춘 | | | |
| 14 | 속초시 금호동 | 484-1 47 | 계단 | 시멘트콘크리트 1.0*3.0 | 1 | 식 | 김금춘 | | | |
| 15 | 속초시 금호동 | 484-1 47 | 바닥포 장 | 시멘트 | 20 | m ² | 김금춘 | | | |
| 16 | 속초시 금호동 | 484-1 47 | 주거이 전비 | 소유자 1인 | 1 | 식 | 김금춘 | | | |

| | | | | | | | | | | |
|----|------------|-------------|-------------|---------------------------------------|-----------|---|----------------|--------------|------|---------------------------|
| 17 | 속초시 금호동 | 484-1 47 | 이사비 | 99㎡이상 | 1 | 식 | 김금춘 | | | |
| 18 | 속초시 금호동 | 473-3 83 | 주택 | 시멘트벽돌및 샌드위치판넬조 합석기와지붕 | 39 | ㎡ | 김봉수 | | | 전체면적: 78㎡ |
| 19 | 속초시 금호동 | 473-3 83 | 보일러 실 | 샌드위치판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1.2*3.0(보일러포함) | 3.6 | ㎡ | 김봉수 | | | |
| 20 | 속초시 금호동 | 473-3 87 | 주택 | 시멘트블럭조 슬레이트지붕 | 1 | ㎡ | 김필성 | | | 전체면적: 25.00㎡ |
| 21 | 속초시 금호동 | 473-4 02 | 주택 | 시멘트블럭조 슬레이트기와지 붕 (보일러실포함) | 52.8 3 | ㎡ | 김행선 | | | |
| 22 | 속초시 금호동 | 473-4 02 | 차양 | 슬레이트 | 11.5 3 | ㎡ | 김행선 | | | |
| 23 | 속초시 금호동 | 473-4 02 | 담장1 | 시멘트블럭조 H1.2*L10.5 | 1 | 식 | 김행선 | | | |
| 24 | 속초시 금호동 | 473-4 02 | 담장2 | 시멘트블럭조 H1.2*L10.0 | 1 | 식 | 김행선 | | | |
| 25 | 속초시 금호동 | 473-4 02 | 문주 | 시멘트블럭조 0.4*0.5,H1.2 | 2 | 식 | 김행선 | | | |
| 26 | 속초시 금호동 | 473-4 14 | E.G.I 웬스 | H2.5*L60 | 1 | 식 | 성림종합건 설주식회사 | | | |
| 27 | 속초시 금호동 | 473-3 94 | 이사비 | 99㎡ 이상 | 1 | 식 | 이수미 | | | |
| 28 | 속초시 금호동 | 484-1 49 | 주택 (공가) | 시멘트벽돌조 슬레이트및기와 지붕(일부멸실) | 24.1 5 | ㎡ | 엄두일 | 속초신용 협동조합 | 근저당권 | 484-19 전체면적: 28.86㎡ |
| 29 | 속초시 금호동 | 484-1 49 | 창고 | 시멘트벽돌조 2.5*1.3 | 2.75 | ㎡ | 엄두일 | | | |
| 30 | 속초시 금호동 | 484-1 49 | 화장실 | 시멘트벽돌조 1.1*1.0 | 1.1 | ㎡ | 엄두일 | | | |
| 31 | 속초시 금호동 | 484-1 50 | 주택 | 시멘트블럭조 슬레이트지붕 | 16 | ㎡ | 임인자 | | | 전체면적: 21.00㎡ |
| 32 | 속초시 금호동 | 484-1 50 | 화장실 | 시멘트블럭조 슬레이트지붕 1.4*1.6 | 2.24 | ㎡ | 임인자 | | | |
| 33 | 속초시 금호동 | 484-1 50 | 창고 | 시멘트블럭조 슬레이트지붕 2.0*2.0 | 4 | ㎡ | 임인자 | | | |

| | | | | | | | | | | |
|----|------------|-------------|-------------------|---|-----------|----------------|-----|--------------|------|------------------------------|
| 34 | 속초시 금호동 | 484-1 50 | 담장 | 시멘트블럭조 H0.8*L3.5 | 1 | 식 | 임인자 | | | |
| 35 | 속초시 금호동 | 484-1 50 | 수도전 | | 1 | 식 | 임인자 | | | |
| 36 | 속초시 금호동 | 484-1 50 | 바닥포 장 | 시멘트콘크리트 | 25 | m ² | 임인자 | | | |
| 37 | 속초시 금호동 | 473-3 97 | 창고 | 시멘트블럭조 슬레이트지붕 | 41 | m ² | 최선길 | | | 전체면적: 67.42m ² |
| 38 | 속초시 금호동 | 473-3 97 | 출입문 | 철재,자바라 H2.0*L2.3 | 1 | 식 | 최선길 | | | |
| 39 | 속초시 금호동 | 473-3 97 | 간판1 | 파 나 플 렉 스,0.8*4.0 지주대-철파이프 H=4.5 | 1 | 식 | 최선길 | | | |
| 40 | 속초시 금호동 | 473-3 97 | 간판2 | 회 전 간 판,0.3*1.0 지주대-철파이프 H=4.0 | 1 | 식 | 최선길 | | | |
| 41 | 속초시 금호동 | 473-3 97 | 출입계 단 | 시멘트벽돌조 1.5*1.2 | 1 | 식 | 최선길 | | | |
| 42 | 속초시 금호동 | 473-3 97 | 이전비 (양 말 등) | | 1 | 식 | 최지영 | | | |
| 43 | 속초시 금호동 | 484-1 61 | 창고 | 목조슬레이트지붕 4.6*6.8 (일부멸실) | 31.2 8 | m ² | 최희길 | | | |
| 44 | 속초시 금호동 | 484-1 61 | 출입문 (통로) | 알루미늄샷시 0.9*1.0 | 1 | 식 | 최희길 | | | |
| 45 | 속초시 금호동 | 484-1 61 | 계단 | 시멘트블럭조 1.0*4.5 | 1 | 식 | 최희길 | | | |
| 46 | 속초시 금호동 | 473-4 05 | 창고 | 시멘트블럭조 슬레이트지붕 | 46.3 8 | m ² | 황병찬 | | | |
| 47 | 속초시 금호동 | 473-4 51 | 1층(상 가) | 경량철골조 아스팔트성글지붕 | 21 | m ² | 황병찬 | 주식회사 조흥은행 | 근저당권 | 473-81 |
| 48 | 속초시 금호동 | 473-4 51 | 2층(상 가) | 경량철골조 아스팔트성글지 붕 | 21 | m ² | 황병찬 | 주식회사 조흥은행 | 근저당권 | 473-81 |
| 49 | 속초시 금호동 | 473-4 51 | 셔터 | 철재 L4.6*R0.7 | 1 | 식 | 황병찬 | | | |
| 50 | 속초시 금호동 | 473-4 54 | 1층(상 가) | 시멘트벽돌조 | 91 | m ² | 황병찬 | 주식회사 조흥은행 | 근저당권 | 473-82 |

| | | | | | | | | | | |
|----|------------|-------------|---------------------------|---|------|----------------|-----|--------------|------|---|
| 51 | 속초시 금호동 | 473-4 54 | 2층(상 가) | 시멘트벽돌조 슬레이트지붕 | 91 | m ² | 황병찬 | 주식회사 조흥은행 | 근저당권 | 473-82 |
| 52 | 속초시 금호동 | 473-4 54 | 출입문 | 샌드위치판넬및 스 테 인 레 스 9.6*0.8 (철재셔더포함) | 1 | 식 | 황병찬 | | | |
| 53 | 속초시 금호동 | 473-4 54 | 간판1 | 가로형,파나플렉 스 0.5*4.5 | 1 | 식 | 황병찬 | | | |
| 54 | 속초시 금호동 | 473-4 54 | 간판2 | 세로형.돌출형 0.5*3.0 | 1 | 식 | 황병찬 | | | |
| 55 | 속초시 금호동 | 473-4 54 | 대용사 (이·미 용 재 료) | 영업 | 1 | 식 | 황병찬 | | | |
| 56 | 속초시 금호동 | 473-4 54 | 시설이 전등 (1,2층 전체) | 진열장, TV, 김 치냉장고, 싱크 대, 미용재료 등 | 1 | 식 | 황병찬 | | | |
| 57 | 속초시 금호동 | 473-3 90 | 1층(주 택) | 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 3 | m ² | 미상1 | | | 473-167 전체면적: 44.00m ² |
| 58 | 속초시 금호동 | 473-3 90 | 2층(주 택) | 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 3 | m ² | 미상1 | | | 473-167 전체면적: 44.00m ² |
| 59 | 속초시 금호동 | 473-3 90 | 옥상층 (창고) | 목조 슬레이트지 붕 | 17.3 | m ² | 미상1 | | | |
| 60 | 속초시 금호동 | 473-3 90 | 옥상층 (통로) | 시멘트블럭조 슬레이트지붕 | 6.14 | m ² | 미상1 | | | |
| 61 | 속초시 금호동 | 484-5 | 매쉬웬 스 | H1.8*L3.6 | 1 | 식 | 미상2 | | | |
| 62 | 속초시 금호동 | 484-1 63 | 컨테이 너 | 3.0*4.0 | 1 | 식 | 미상3 | | | |
| 63 | 속초시 금호동 | 484-1 63 | 컨테이 너 | 3.0*3.0 | 1 | 식 | 미상3 | | | |

●속초시 공고 제2020-950호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속초시에서 인허가(또는 발주)된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9월 16일

속초시장

| 연번 | 상호명 | 대표자 | 등록번호 | 등록분야 | 비고 |
|----|------------------|-------------------|---------|-------------|----|
| 1 | (주)이솔구조건축사사무소 | 호종훈 박상희 | 강원-103호 | 건축 | |
| 2 | (주)한국안전이엔지 | 권회구 | 서울-205호 | 건축 | |
| 3 | (사)대한산업안전협회 | 윤양배 | 서울-28호 | 종합 | |
| 4 | (재)한국재난연구원 | 윤영조 | 서울-33호 | 종합 | |
| 5 | (주)하제건축사사무소 | 이상열 오영욱 유지영 | 서울-343호 | 건축 | |
| 6 | (주)한국건설안전시스템 | 김성일 | 서울-85호 | 건축 | |
| 7 | 에스큐엔지니어링(주) | 이래철 | 서울-178호 | 종합 | |
| 8 | 진엔지니어링(주) | 채원진 강두현 | 서울-268호 | 건축 | |
| 9 | 엘림주식회사 | 김순영 | 경기-217호 | 건축 | |
| 10 | 한국씨엠이엔지(주) | 황용선 | 강원-95호 | 교량및터널,수리,건축 | |
| 11 | (주)윈피씨엔지니어링 | 임주혁 | 경기-199호 | 건축 | |
| 12 | (주)한국구조기술사사무소 | 신상익 | 서울-143호 | 건축 | |
| 13 | (주)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 김주열 | 서울-123호 | 건축 | |
| 14 | (주)다올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이종우 안동한 | 강원-113호 | 건축 | |
| 15 | (주)동우기술단 | 고중호 | 경기-85호 | 종합 | |
| 16 | 한국종합안전(주) | 장정규 | 서울-63호 | 건축 | |
| 17 | (주)한국안전진단기술원 | 이윤종 | 서울-185호 | 교량및터널,건축 | |
| 18 | (주)다음기술단 | 박철 | 경기-9호 | 종합 | |
| 19 | (주)한국시설안전평가원 | 소정임 | 서울-302호 | 교량및터널,건축 | |
| 20 | (주)조영이엔씨 | 이해일 | 서울-159호 | 건축 | |
| 21 | 지호이엔씨(주) | 지미숙 | 강원-58호 | 교량및터널,수리,건축 | |
| 22 | (재)한국건설안전기술원 | 김성환 | 경기-216호 | 교량및터널,수리,건축 | |
| 23 | (사)한국건설안전협회 | 한경보 | 서울-21호 | 종합 | |

| 연번 | 상호명 | 대표자 | 등록번호 | 등록분야 | 비고 |
|----|----------------|-------------------|---------|-------------|----|
| 24 | 한국건설리노텍(주) | 정명래 | 경기-169호 | 건축 | |
| 25 | (주)월드안전진단 | 조현석 | 서울-14호 | 건축 | |
| 26 | 경인엔지니어링(주) | 장기정 | 경기-125호 | 교량및터널,수리,건축 | |
| 27 | (주)건설표준시험원 | 노선미 | 경기-74호 | 교량및터널,건축 | |
| 28 | (주)한림구조엔지니어링 | 정석봉 | 서울-39호 | 건축 | |
| 29 | (재)한국건설구조안전연구원 | 홍성모 | 서울-5호 | 건축 | |
| 30 | (주)대한이앤씨 | 박주경 | 경기-111호 | 종합 | |
| 31 | 라운구조안전기술(주) | 김명희 | 서울-252호 | 교량및터널,수리,건축 | |
| 32 | (주)형상엔지니어링 | 최병호 서형석 손상해 | 서울-263호 | 건축 | |

속초시 규제체계 개선·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규제체계 개선·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 등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15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규제체계 개선·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등 부적절한 규제의 일제정비를 통해 행정규제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불필요 규제조항 삭제 및 상위법 위임조항 명시 등을 통한 상위법과의 괴리 예방으로 규제 법정주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 불부합 규제조항을 개정함.(안 제1조~제5조, 제15조)
- 나.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불필요 규제조항을 삭제함.(안 제1조, 제2조, 제5조~제12조)
- 다. 상위법과의 괴리 예방을 위하여 위임법령의 제명 및 조항을 기재함.(안 제9조, 제13조, 제14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0. 5.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기획예산과 교류규제평가팀
- 연락처 : 전화(033-639-2216), 팩스(033-639-2106)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6.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기획예산과 교류규제평가팀(☎033-639-22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규제체계 개선·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본문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을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속초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5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로 한다.

제5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6조제3호 중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으로,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이하로 한다”를 “이하”로 한다.

제3조(「속초시 건축 조례」의 개정)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제12항”을 “제14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3조의2제5항”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로,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 제23조의2제1항”을 “영 제8조제1항”으로,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를 “긴급점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시점검”을 “긴급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시점검 대상”을 “긴급점검 대상”으로 한다.

제4조(「속초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간판

제5조(「속초시 지하수 조례」의 개정) 속초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이행보증금에 대한 산정기준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를 따른다.

제17조제4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6조(「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개정)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감면 특례의 제한) 시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감면 특례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속초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및 상한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를 따른다.

제8조(「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점유면적) 공설방안시설 중 방안묘의 점유면적은 법 제18조제3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9조(「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의 개정)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중 “종량제봉투판매업”을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업”으로 한다.

제10조(「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부설주차장”을 “영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한다.

제1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1조(「속초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공원점용허가) 공원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제4조(녹지점용허가)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법 제38조, 영 제43조 및 제44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제12조(「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3조(「속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전통시장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 한다.

제14조(「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개정)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시장”으로 한다.

제15조(「속초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조례」의 개정) 속초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훼손한 자에게 법 제21조 및 「도로법」 제 76조에 따라 복구에 필요한 부담금을 부과”를 “피해를 입었을 때, 훼손한 자에게 원상 복구 요구 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여 대집행”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부담금의 강제징수) 시장은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로수 승인신청서(제21조 제2항 관련)”를 “가로수 승인신청서”로 하고,

“「속초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속초시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로수 승인서(제21조 제3항 관련)”를 “가로수 승인서”로 하고,

“「속초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속초시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제20조제3항의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 시 설 명 | 구 분 | 기 준 | 사 용 료 | |
|---------------|-----------------------|----------------|--|-----------------|
| 샤 위 장 | 어 른 군인, 청소년 어린이 | 1회 1회 1회 | 2,000 1,500 1,000 | |
| | 코인샤워 | 1회 1분30초 | 500 | |
| 물품보관소 | 보관용 물품 | 1일 | 2,000 | |
| 썬 베 드 | | 1개 / 1회 | 10,000 | |
| 파 라 솔 | 일반형 | 1개 / 1회 | 10,000 | |
| | 대형(가족용) | 1개 / 1회 | 30,000 | |
| 튜 브 | 대형 | 1개 / 1회 | 10,000 | |
| | 소형 | | 5,000 | |
| 구명조끼 | 대형 | 1개 / 1회 | 10,000 | |
| | 소형 | | 5,000 | |
| 국민여가 캠 핑 장 | 오토캠핑장 | 1개소/1일/1차량 | 성수기 | 비수기 |
| | | | 40,000 | 30,000 |
| | 샤워장 (코인온수샤워기) | 1회 이용 | 성수기 | 비수기 |
| | | | 최초 1회 1,000원 3분이용 *추가 500원 1분 30초이용 | 1회 500원 4분이용 |

<비 고>

- 위 표에서 사용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 가. 어른 : 만 19세 이상의 사람
 - 나. 군인 : 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한 사람으로 단기하사 이하의 사람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공익 근무요원 포함)
 - 다. 청소년 : 만 12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
 - 라. 어린이 : 만 7세 이상 만 12세 미만인 사람
 - 마. 캠핑장의 성수기 : 여름 피서철(7.1~8.31), 단풍철(10.1~10.30)
 - 바. 캠핑장의 비수기 : 성수기 이외의 기간
 - 사. 캠핑장 샤워장의 성수기 : 해수욕장 개장기간
 - 아. 캠핑장 샤워장의 비수기 : 해수욕장 개장이외의 기간
- 오토캠핑장 이용차량이 캐라반인 경우 전기요금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 속초해수욕장 주변에 조성된 임시주차장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한하여 유료로 운영하
며, 사용료는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명시된 성수기 요금을 적용하고 비수기
에는 지역주민 전용 주차장으로 무료 사용토록 한다.
- 속초해수욕장 야간개장(18:00시 이후) 기간 중 구명조끼 사용료는 50% 범위 내에서 감면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식 재 이 식 제 거 가지치기 **승인신청서**

| | | | | | | |
|---|---------|------------------------------|-----------------------|-------------------|-----|--|
| 신청인 | 성명(상호) |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소재지) | | | | 연락처 | |
| 사업대상 | 가로수 위치 | | | | | |
| | 수종 | 규격 | 수고: 흉고직경: 근원직경: | 수량 | 본 | |
| 사유 | | | | | | |
| 작업방법 | | | | | | |
| 작업기간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 | | | |
| <p>「속초시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속 초 시 장 귀하</p> | | | | | | |
| <p>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 1부</p> | | | | | | |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식 재 이 식 제 거 가지치기 승인서

| | | | | | | |
|--|---------|----------------------------|---------------------------|-------------------|---|--|
| 승 인 자 | 성 명(상호) |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소재지) | | | | | |
| 사업 대상 | 가로수위치 | | | | | |
| | 수 종 | 규격 | 수 고: 흉고직경: 근원직경: | 수 량 | 본 | |
| 작 업 사 유 | | | | | | |
| 작 업 방 법 | | | | | | |
| 작 업 기 간 | | 년 월 일 년 월 일 | 일부터 일까지(일간) | | | |
| 승 인 조 건 | | | | | | |
| 부담금 | 금 액 | 금 | 원정() | | | |
| | 납부기간 | | | | | |
| <p>「속초시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50px;">속 초 시 장 인</p> | | | | | | |
| <p>첨 부 1. 승인조건 1부. 2. 고지서 1부.</p> | | | | | | |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4조(차마의 출입금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마는 백사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백사장 정비 등 부득이한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 제14조(차마의 출입금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 -----. ----- -----. |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51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 제51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6 . -----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 |

제53조(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 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7.8.>

1.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2.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의 길이의 3분의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

제53조(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 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② ~ ⑥ (생략)

제56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
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
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
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이하로 한다

4.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6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
의 용적률) -----

-----.

1.·2. (현행과 같음)

3. ----- 자연공원
----- 이하

4. (현행과 같음)

「속초시 건축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5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인 건축공사감리 대가 | 제25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 제14항----- ----- ----- ----- ----- ----- |

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30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영 제8조제1항 -----
----- 긴급점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 긴급점검 -----

-----.

④ ----- 긴급점검 대상-----

로 지정·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
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수시
점검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 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 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 고물등은 제외한다.</p> <p>1.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 다)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p> | <p>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 ----- ----- -----. ----- -----.</p> <p>1.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 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 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 면이용간판</p> |

「속초시 지하수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 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p> | <p>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이행보증금에 대한 산정기준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를</p> |

신고 시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퍼센트

2.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5퍼센트로 하고,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생략)

제17조(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

③ (생략)

④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0조(가산금 등) ① 시장은 부담

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요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시(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삭제>

여야 하는 자가 그 기한까지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16조(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감면 | <p>제16조(감면 특례의 제한) 시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감면 특례를 제한할 수 있다.</p> |

「속초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
위 등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 대상공 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후단 삭제 2016.12.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u> 2. <u>배수로 설치공사</u> 3. <u>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u> 4. <u>보안등 공사</u> 5. <u>보도블럭 설치공사</u> 6. <u>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u> 7. <u>마을회관공사</u> 8. <u>공중화장실공사</u> 9. <u>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 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 단하는 공사</u> 10. <u>공원 공사</u> 11.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u> | <p>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 대상공 사의 범위 및 상한금액은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를 따른 다.</p> |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22조(점유면적) 공설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개인단의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부단(부부 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을 말한다)은 3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p> | <p>제22조(점유면적) 공설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점유면적은 법 제18조제3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을 따른다.</p> |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5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시장이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 오지 등으로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폐기물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 <p>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관광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인 경우에</p> | <p><삭제></p> |

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속초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제26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취소) ① 종량제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해서는 판매소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6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취소) ① 법제14조제7항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업-----

-----.

-----.

②·③ (현행과 같음)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구조 설비기준) ① <u>부설주차장</u> 의 설치기준은 별표 7을 적용하며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구조 설비기준) ① <u>영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u> 에 따른 부설주차장----- -----. |

②·③ (생략)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 ④ (생략)

⑤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4%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속초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3조(공원점용허가)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p> <p>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p> | <p>제3조(공원점용허가) 공원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p> |

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 공원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2.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나.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의 목적일 것

다. 「지적법」에 따른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2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3. 영 제22조제10호에 따른 가설 건축물

가. 하나의 공원을 2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일 것

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가. 해당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 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

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

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일 것

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마을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5. 노외주차장: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무근콘크리트 또는 쇠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6.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③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허가시에는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목적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그 밖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 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3.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4.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지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는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 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는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3.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제4조(녹지점용허가) ①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녹지점용허가)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법 제38조, 영 제43조 및 제44조, 「도시공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1. 제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전까지의 기간에 한할 것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제3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할 것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마목의 단서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할 것.

사. 철도변 녹지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할 것.

아.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대

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 허가할 것.

3.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녹지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 상태의 녹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처리할 것.

③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8조(공사의 시행) ① (생략) ② <u>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u> | 제8조(공사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u>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기</u> |

바에 따른다.

③ ~ ⑤ (생략)

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속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3조(시설물등의 설치기준) ① <u>시장</u> 의 안과 밖에 시설물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 5. (생략) ② (생략) | 제3조(시설물등의 설치기준) ① <u>전통시장</u>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u>시장</u>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u>시장</u>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8. (생략) ②·③ (생략)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u>국민건강증진법</u> 제9조제7항에 따라, <u>시장</u> -----. 1. ~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속초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19조(훼손자 부담금) ①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고의로 훼손한 자에게 법 제21조 및 「도로법」 제 76조에 따라 복구에 필요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 <p>제19조(훼손자 부담금) ① ----- ----- ---- 피해를 입었을 때, 훼손한 자에게 원상복구 요구 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여 대집행----- -----.</p> <p>②·③ (현행과 같음)</p> |
| <p>제21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p> <p>② 삭제</p> <p>③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p> | <p>제21조(부담금의 강제징수) 시장은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p> |

속초시 규제체계 개선·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속초시 규제체계 개선·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 등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15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규제체계 개선·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등 부적절한 규제의 일제정비를 통해 행정규제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불필요 규제조항 삭제 및 상위법 위임조항 명시 등을 통한 상위법과의 괴리 예방으로 규제 법정주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 불부합 규제조항을 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불필요 규제조항을 삭제함.(안 제1조 및 제2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0. 5.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기획예산과 교류규제평가팀

— 연락처 : 전화(033-639-2216), 팩스(033-639-2106)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6.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기획예산과 교류규제평가팀(☎033-639-22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규제체계 개선·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제1조(「속초시 급수공사 대행 규칙」의 개정) 속초시 급수공사 대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0조) 및 제11조(종전의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공사정지, 재시공 명령 등) 시장은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부적당하거나 시공의 조작 또는 조작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시행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이상을 초래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5조) 중 “제14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를 제17조로 한다.

제2조(「속초시농지개량사업환지청산금취급규칙」의 개정) 속초시농지개량사업환지청산금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급수공사 대행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8조(보증금 예치 등) ①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시공한 공사의 하자 등으로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수용가의 손해배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지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일천만원을 현금으로 시에 예치하거나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2년을 포함하여 총 4년으로 한다.</p> <p>③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시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증금으로 시 또는 다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금이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p> <p>④ 대행업자 지정이 소멸 또는 취소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현금</p> | <p><삭 제></p> |

으로 예치된 보증금은 소멸 또는
취소된 날부터 하자담보 책임기간
인 2년이 경과한 후 반환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
한 이자는 대행업자에게 반환한
다.

제9조 (생략)

제10조(공사정지, 재시공 명령 등)

① 시장은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
자가 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부
적당하거나 시공의 조작 또는 조
작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
른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제8조
제3항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
다.

제11조 (생략)

제12조(보수책임) ① 대행업자가 공
사시행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누
수 등으로 이상을 초래할 경우에
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
른 보수를 게을리 할 경우에는 제

제8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9조(공사정지, 재시공 명령 등)

시장은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부적당
하거나 시공의 조작 또는 조작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1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
시행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기
존의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이상을 초래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8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제14조 (생략)

제15조(공사비 청구) 대행업자는 제14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필한 후 준공검사 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 게 공사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16조·제17조 (생략)

제18조(위반처분)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제4조의 지정 요건에 미달된 경우
3.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8조에 따른 보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9조제3호를 위반한 경우
6.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공사를 시공한 경우
7.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기간 중에 다시 영업정

제12조·제13조 (현행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

제14조(공사비 청구) ----- 제13조-----

-----.

제15조·제16조 (현행 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음)

<삭제>

지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영업정지 횟수가 2회를 초과하거나 영업정지 일수가 총 1년이 넘는 경우

9.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설치를 알선하거나 그 밖의 비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영업설비가 별표 1의 기준에 미달될 경우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할 경우

3. 급수공사의 조잡한 시공으로 수용가 또는 공중에게 손해를 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을 기피할 경우

5. 조례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 규칙의 집행을 위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제19조 (생략)

제17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속초시농지개발사업환지청산금취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7조(징수금의 독촉) ①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p> <p>② ~ ⑤ (생략)</p> | <p>제7조(징수금의 독촉) <삭제></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14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규정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2조)
- 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단장 임무, 실무팀 편성, 지원단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 마.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바. 자원봉사활동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가.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0. 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사항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 연락처 : 전화 033-639-2135 / 팩스 033-639-2590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033-639-21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속초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속초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 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 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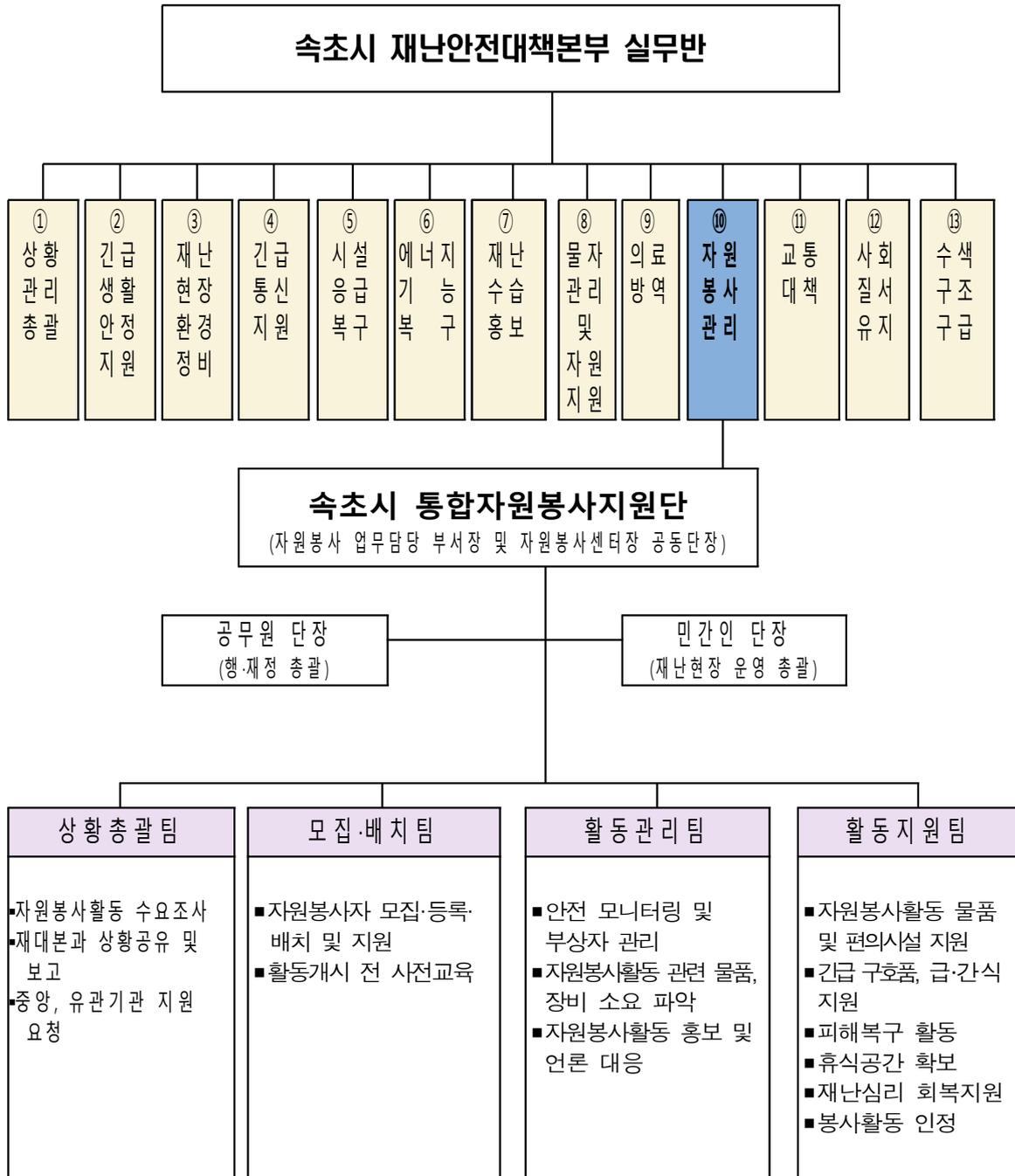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표준편제(제6조 제2항 관련)



「별표 2」

지원단 운영 업무 분담(제6조 제2항 관련)

| 팀명 | 구성 | 담당 사무 |
|--------|--|--|
| 단장 | 공무원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단 구성·운영 총괄 (행·재정적 지원) |
| | 민간인 (자원봉사센터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단 구성·운영 총괄 (재난현장 운영) |
| 상황총괄팀 | 자원봉사 업무 담당부서 팀장, 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 지역대책본부와의 연계(상황공유·보고 등) ■ 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 ■ 중앙, 유관기관 지원 요청 |
| |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활동 실시 안전 확보 ■ 자원봉사활동 기록(모니터링, 일일보고서 등) ■ 지원단 관련 뉴스 대응 및 홍보 총괄 |
| 모집·배치팀 | 자원봉사센터 팀장, 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총괄 (일별, 분야별) |
| | 자원봉사센터 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지원 (일별, 분야별) |
| 활동관리팀 | 자원봉사 업무 담당부서 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장비 소요 파악 |
| | 자원봉사센터 팀장, 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언론 대응 |
| 활동지원팀 | 자원봉사 업무 담당부서 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활동 물품 및 편의시설 지원 ■ 긴급 구호품, 급간식지원 ■ 피해복구 활동 ■ 휴식공간 확보 ■ 재난심리 회복지원 ■ 봉사활동 인정 |
| | 자원봉사센터 팀장, 팀원 | |
| | 대한적십자사속초지구 봉사회 속초시자율방재단 속초시새마을회 속초시 민간단체 | |

※ 제6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지역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사무를 정한다.

속초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16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공동 출연하여 도·시군의 관광사업을 통합 실행할 전 문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정책 전담 실행기구로서 설립하는‘강원도 관광재단’ 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관광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종류 (안 제2조)
- 나. 시장이 관광재단에 출연 또는 보조 등 재정지원 근거 (안 제3조)
- 다. 시장이 관광재단에 업무의 위탁·대행 (안 제5조)
- 라. 시장이 관광재단에 공무원의 파견근무 (안 제6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0. 6.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관광과 관광기획팀
- 연락처 : 전화(033-639-2365), 팩스(033-639-2384),
전자문서(passion365@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관광과 관광기획팀(☎ 033-639-2365)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강원도 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강원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법인 강원도 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2.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3.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크루즈 등 육성 지원
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
6. 관광시장 조사·연구·컨설팅 및 정보 제공
7.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
8.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9.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
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제3조(재정지원)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업무의 위탁·대행) ① 시장은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속초시의 출연 또는 보조와 관련하여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